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4가단10479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 피고 B는 원고에게 망 C(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9.부터 2024.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망 C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음)
- 판사 김성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고는 원고의 남편 D의 친구이고, 주채무자인 소외 E은 피고의 후배로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과는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 및 보증채무 계약 체결

가. 금전소비대차 계약

원고의 남편 D은 2022. 7. 중순경에 친구인 피고가 '자신의 후배인 소외 E에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E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시중 이자보다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위 E이는 믿음직한 사람이니 피고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을 하자 원고에게 위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돈이 부족한 관계로 2022. 7. 18.에 48,500,000원을 원고 시어머니 P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소외 E에게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갑 제1호증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2022. 7. 18.자 찾으신 금액 참조)

나. 보증채무 계약체결

6개월만 사용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간 주채무자인 소외 E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다 되도록 시중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주기로 한 이자 및 원금을 한 톨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연히도 없는 소외 E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의 친구인 피고를 믿고 빌려주었기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2023. 7. 18.에 주채무자인 E이 차용한 금 48,500,000원과 1년간 연체한 이자까지 감안하여 금 5,000만원을 2024. 1.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보증채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제2호증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 주채무자인 소외 E의 채무이행지체 및 변제능력

주채무자인 E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 E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4. 청구요지

사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E에게 대어한 대여금 48,500,000원 및 연체한 약정이자 일부를 보증한 보증채무 5,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자 변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원고는 망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고자 C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으나 C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를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B, 미성년자 G, H, I으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상속인 중 B만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피고를 B 1명으로 특정을 하면서 청구취지 또한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변제 범위에 맞게 변경을 하여 청구합니다.

